

##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

남양주어르신주간보호는 어르신의 섬김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하는 기관입니다.

“노인학대”라 함은 어르신을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이 자료는 노인학대를 예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노인학대가 행해질 경우 신속히 신고하여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노인학대<br>신고·상담 | 신고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| ☎ 1577-1389 : 13(일상) 빨리(8) 구해(9) 해주세요. |
|               | 상담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| ☎ 031-591-5060 (남양주어르신주간보호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※ 신고 또는 상담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 받습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〈노인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기준 (노인복지법 제39조 및 제55조)〉
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-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(제55조의 2)
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
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(제55조의 3)

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 
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(제55조의 3)
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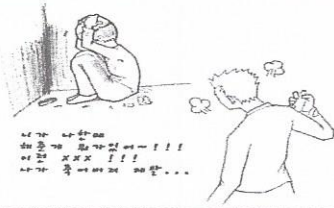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(제55조의 3)
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(제55조의 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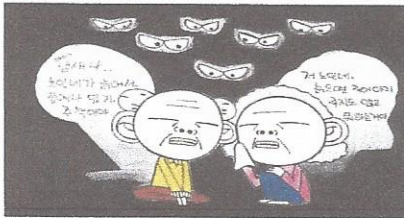


## 〈노인학대 유형〉



### 신체적 학대

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

### 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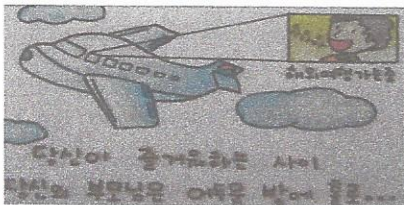
### 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, 성추행,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

### 경제적 학대(착취)

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


### 방임

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

### 자기 방임

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



### 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## 〈노인학대 체크리스트〉

알쏭달쏭한 노인학대 행위!!

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학대를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○ 신체적 학대를 체크☑해 봅시다.

- ☐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, 골절 등의 피해가 생긴 적이 있다.
- ☐ 치료나 요양(재활)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.
- ☐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적이 있다.
- ☐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해온 적이 있다.
- ☐ 적합한 절차 없이 신체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(끈이나 억제대로 묶어두기, 손이나 발목 또는 몸을 묶기 등)를 사용한 적이 있다.
- ☐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, 음식, 약물(심장관련, 당뇨, 혈압 등)로부터 단절시킨 적이 있다.
- ☐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 적이 있다.

○ 정서적 학대를 체크☑해 봅시다.

- ☐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있다.
- ☐ 어르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, 모욕적인 말,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.
- ☐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있다.
- ☐ 어르신에게 '돌보지 않겠다.(요양기관)', '요양기관이나 병원에 보내겠다.', '밥 안주겠다.', '죽게 내버려 두겠다.'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.
- ☐ 재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요한 결정사항-서비스제공방법 및 물품사용 등-에 대해 어르신(주 수발자)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적이 있다.
- ☐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, 반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.
- ☐ 종교활동을 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적이 있다.
- ☐ 어르신의 가족,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한적 있다.

○ 성적 학대를 체크☑해 봅시다.

- ☐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.
- ☐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적이 있다.
- ☐ 원하지 않거나,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은 적이 있다.

○ 경제적 학대를 체크☑해 봅시다.

☐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이 있다.

☐ 공적부조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, 노령연금 등)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.

☐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게 한 적이 있다.

☐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.

○ 유기행위를 체크☑해 봅시다.

☐ 자녀들이 전혀 연락되지 않으며,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.

☐ 어르신을 낯선 곳으로 장시간 옮긴 적이 있다.